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7 선고 2023가단994 판결 [압류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나188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7 선고 2023가단994 판결

전문

원고A

피고대한민국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3. 3.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중 131.7분의 63.6 지분(A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7012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서영호

별지

1)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B 대 131.7m²)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는 2021. 9. 23. 토지개발사업이 시행·완료되어 서울 영등포구 C 대 51714.6m² 토지로 바뀌었고, 이에 관할관청에서는 2021. 9. 2.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이전고시'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의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기에登記되어 있던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민사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재판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판결주문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내용대로 선고한다.